

[별표 6] 자동소화시험(제35조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으로 하고 높이는 설치 최대 높이 크기이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높이 지점에 설치 하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최대설치높이 지점에 연동하는 소화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설치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m²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하며,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방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감지부는 설치최대높이 또는 방출구와 동일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시험방법

가. 시험은 B급 설계밀도를 적용하여 시험하고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m²의 정사각형, 높이 100 mm, 두께 6 mm의 철판 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mm 높이로 1회는 소화시험실 중앙에 , 1회는 하부 개구부로부터 시험실 중심 방향으로 5cm 지점에 설치하여(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모형과 가장 먼 위치에 설치한다) 총 2회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